

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1. 5. 30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1. 6. 5

다. 상정일자 : 제1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5차 본회의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재해대책본부 조직표와 실무반 편성 및 분장사무중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“민방위재난관리과장”을 “주민자치과장”으로 하고 “민방위재난관리과”를 “주민자치과”로 함.
- “사회진흥과장”을 “민간협력과장”으로 하고 “사회진흥과”를 “민간협력과”로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이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재해대책 본부의 조직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합리적인 개정이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론요지

“ 없 음 ”

6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